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013.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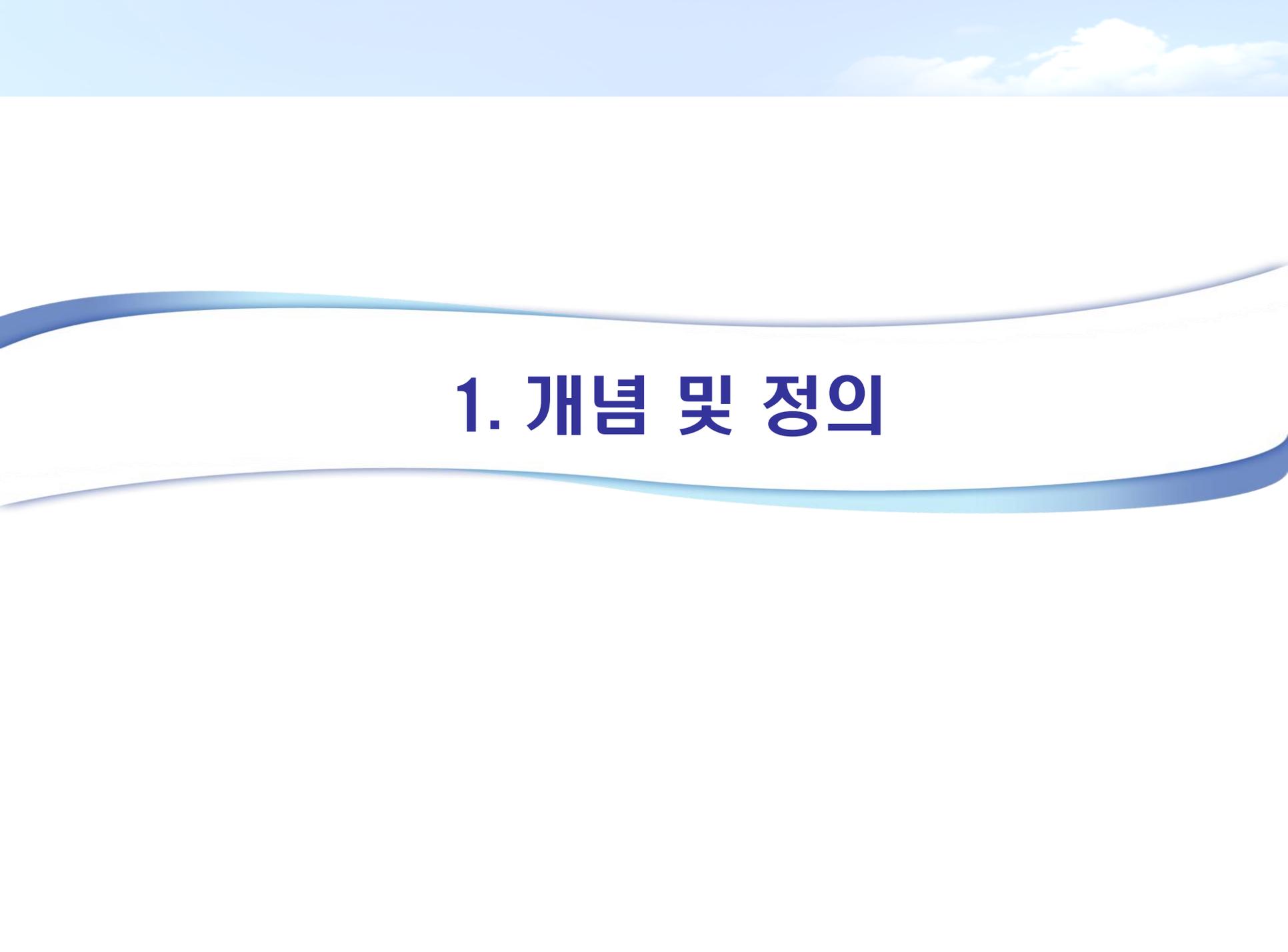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시설사무관 천홍식

# 목차

**1** 개념 및 정의

**2** 건설공사 설계VE 제도

**3** 주요 질의 회신

The slide features a l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 at the top. Below this, two thick, wavy blue lines curve across the page, framing the central text. The text is in a bold, dark blue font.

# 1. 개념 및 정의

# 설계VE 개념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 ※ VE :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 ※ LCC : 총투입비용(기획~철거 및 잔존가치)

# 설계VE 개념

## ※ VE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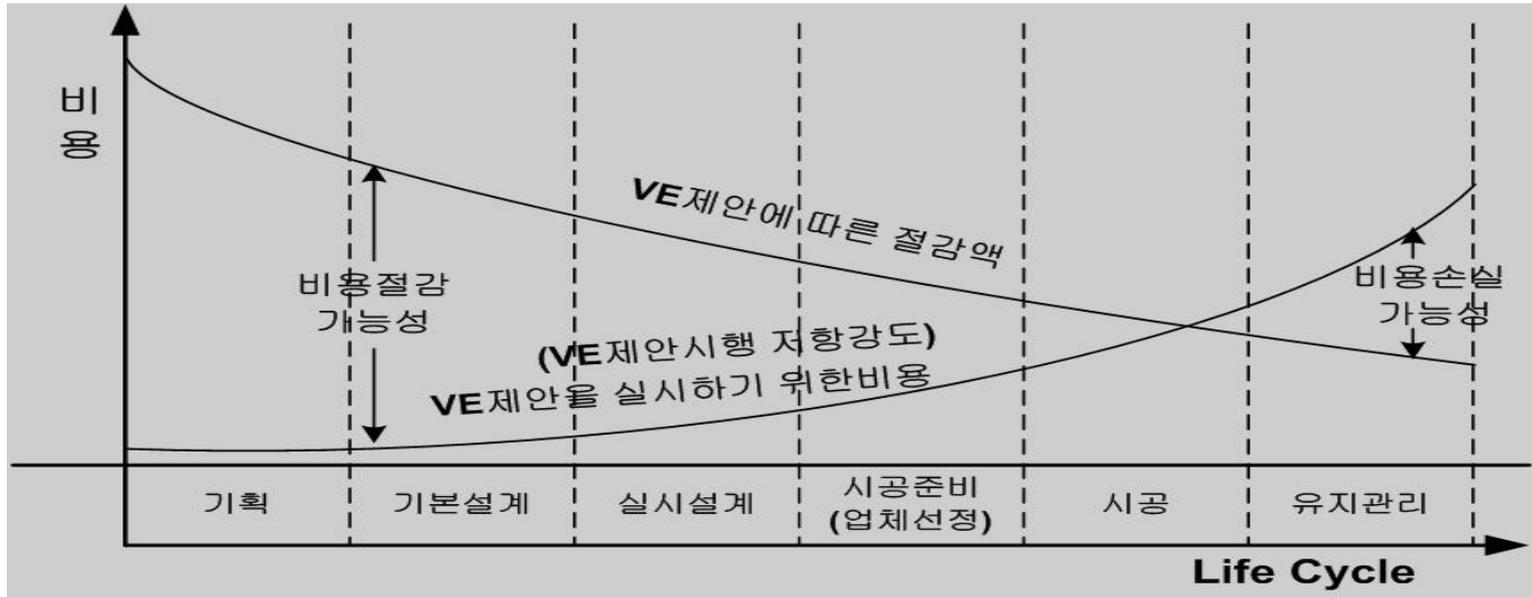
구분	원가절감형	기능향상형	혁신형	기능강조형
$V =$	$\frac{F \rightarrow}{C \downarrow}$	$\frac{F \uparrow}{C \rightarrow}$	$\frac{F \uparrow}{C \downarrow}$	$\frac{F \uparrow}{C \uparrow}$

☞  $Value = \frac{\text{기능(Function)}}{\text{비용(Cost)}}$

- 가치(Value) :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 품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비용효과**
- 기능(Function) : 프로젝트, 공종, 재료 등의 **성능, 품질**
- 비용(Cost) :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비용(LCC)

# 설계VE 개념

## ※ 설계VE 시행 시기별 비용절감 효과



### ● 적용시기가 빠를 수록

- 비용절감 가능성 大, 소요비용 小, 개선효과 大

## 2.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설계VE 시행경위

- '00. 3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 VE) 제도 도입(건기법 시행령)
- '00. 7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06. 1 : 설계 VE 대상공사 확대(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07. 7 : 「건설CALS시스템」에 「건설VE시스템」 연계(설계VE마당)
- '08. 5 : 설계VE 활성화 방안 마련
- '08.11 : 전국 발주기관 VE경진대회(매년 시행)
- '10. 9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대상 공사 명확화, 실시 시기·절차, 참여자 자격 구체화 등
- '11. 9 : 시공VE 제도 도입
- '12. 9 : 전국발주기관 VE경진대회(민간분야까지 확대)
- '13. 9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관련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검토 근거
  - 검토 내용의 설계 반영의무
  - 검토 결과의 제출의무(국토교통부장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고시 제2013-544호, '13.9.16)**
  - (목적)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
  - VE의 대상, 시기, 횟수, 검토조직 등 구체적 검토 방법 및 절차 등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설계감리와의 관계

- 건기법에 따른 설계감리 시행 시 설계감리 업무범위 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

### ● 용어의 정의

- 수정설계 : 설계VE 검토업무를 통해 채택된 제안내용을 설계자가 당해 설계에 반영 등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
- 제안공법 :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VE 검토를 통해 제안한 공법
- 개선제안공법 : 국내,외에서 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방법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야 전문가로 팀을 구성,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 별, 대안 별로 검토

※ 단,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

### ● 검토 실시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여건변동 경미 시 제외)
- 공사시행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 사항(단순물량증가, ESC는 제외)
-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 시공자는 시공 중 필요 시 시공VE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 설계자문이나 설계심의 전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 1회 이상 실시

·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 1회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각 1회 이상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사업 : 공사발주 전 시행, 결과반영 수정설계로 발주

- 시공VE :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 ● 검토업무의 수행자

- 설계감리자, 발주청 또는 시공자 소속직원, VE업무 수행 유경험자, 유사업무 수행자,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원안설계의 설계자 제외**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VE 검토조직 자격요건

- VE Leader : VE전문교육과정(최소 40시간 이상) 이수자

- VE Facilitator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단, Leader가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가능

- 팀원 : 주요공종(전체공사비 10% 이상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 발주청 소속직원만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설계 등 의무대상은 발주청 주관, 시공단계에서 시공자 실시는 도급자주관으로 실시

### ● VE 검토업무 수행자 선정 시 평가항목

- VE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VE검토 업무실적, VE검토수행계획서,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등**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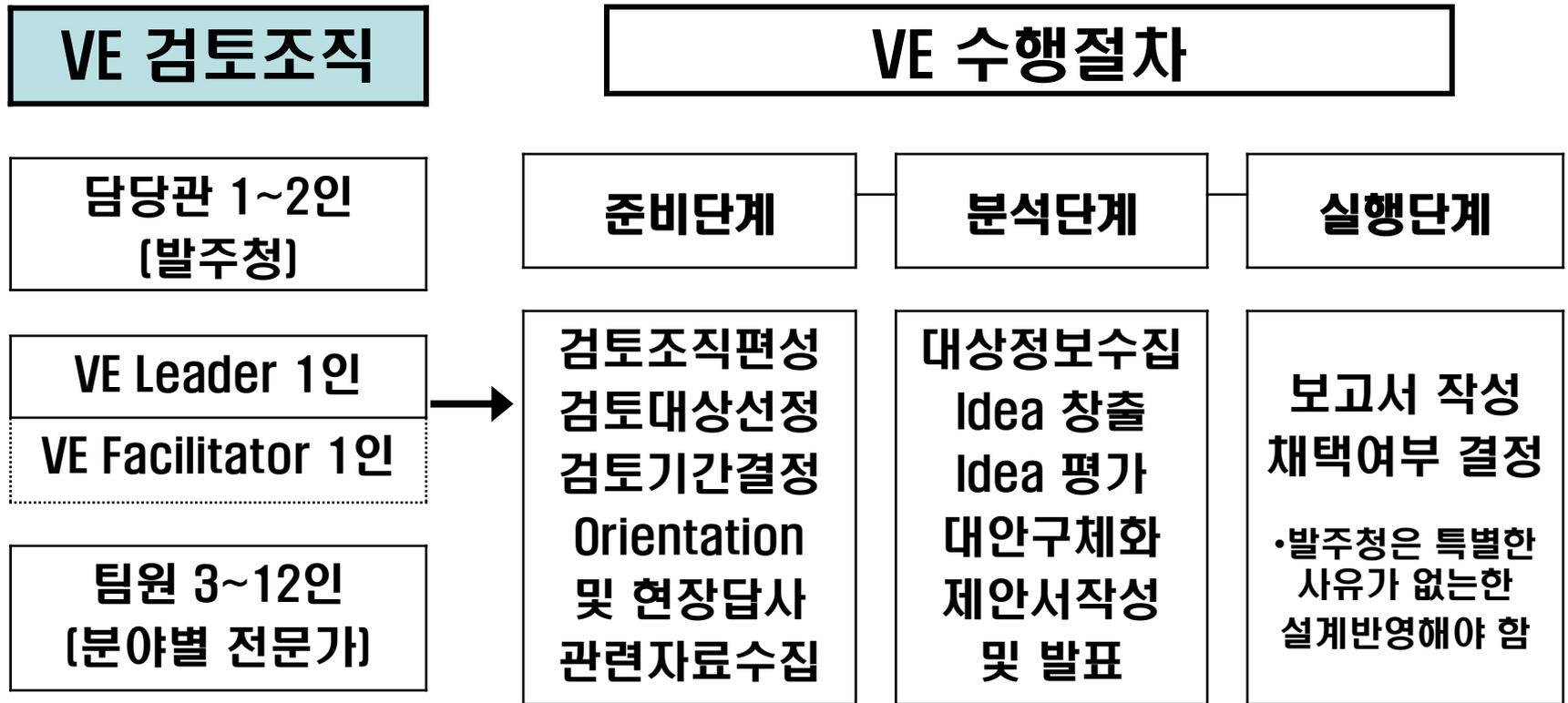
### ●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VE검토 10일전 검토조직에 제시)

-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주요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 설계자는 VE검토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의무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설계VE 운영체제



\*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발주청 주관 시)

- 설계VE검토 제안서(제안자, 사업개요, 제안건수, 절감액 등)
- 생애주기비용 절감 및 가치향상 제안서(제안내용, LCC절감효과, 가치향상 효과, 제안의 특징, 시공시 주의점 등)
- 당초설계와 차이점, 기능변경 시 타당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 제안 채택의 경우 변경된 설계기준, 시방서 목록, 건설비에 미치는 영향

-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도급자 주관 시)

- 제안공법 사용 신청서(신청인, 공사개요, 신청건수, 절감액 등)
- 공사비 절감 제안서(개선내용, 건설공사비와 LCC차원의 공사비내용 등)
- 발주청 주관시 제출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계약서상의 공법과 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제안의 채택(발주청 주관 VE검토 시)

- 발주청은 제안서(VE검토, 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출일 또는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

※ VE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듣고 합의·결정

-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설계자문위) 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채택여부 결정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시공사 주관 VE검토 시)

- 발주청은 **제안서류**(VE검토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
- 다만, 사용승인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제안공법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 · 중심위 · 지방위)에 **심의요청**하고 심의결과 참고하여 **제안공법 사용여부 결정**

※ 발주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공법심의위에 심의요청 가능(제안공법심의 없이 결정된 사항에 한함)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지침 주요내용

### ● 제안공법 심의위 심의

- 심의위는 발주청의 심의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 \* 다만, 부득이한 사유(위원장 판단) 있을 시 1회에 한해 15일 이내 연장가능
- 심의위는 관련서류,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종합적 심의

### ● VE대가의 지급

- VE검토업무 대가는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
  - ※ 단,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별도 산정 가능
-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자체 실시한 VE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

# 건설공사의 설계VE 제도

## ● 수정설계

- 설계자는 VE검토 결과 채택된 제안은 해당설계에 반영하여 발주청 제출
- 수정설계 결과 당초 용역범위 초과시 발주청은 추가비용 지급
-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 승인 시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
- ※ 이경우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사후관리

- 발주청은 VE제안내용, 채택여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매년 12월31일 기준) 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VE결과, 제안공법 처리결과)
- 발주청은 제안 채택일 또는 제안공법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3. 주요 질의 회신

# 주요 질의 회신

- **총공사비의 범위는?**

## ■ 총공사비의 범위는?

-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3호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 후 분할발주 (건당 100억원 미만) 할 계획인 경우, 설계VE대상인지?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 후 분할발주 (건당 100억원 미만) 할 계획인 경우, 설계VE대상인지?
- 설계VE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발주방법에 따른 제반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주요 질의 회신

- 사실상 대안비교가 없고,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단순 관로 터파기 등)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 대상인지?

# 주요 질의 회신

- 사실상 대안비교가 없고,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단순 관로 터파기 등)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 대상인지?
- 설계VE는 공사의 난이도나 성격 등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 대상임

# 주요 질의 회신

- 건설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 주요 질의 회신

- **건설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 **건설공사 부분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의무대상은 아님**
  - ※ 단, VE는 시설물 공사 외 전기, 통신 등 타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기법으로 당해 시설의 특성,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필요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와 설계VE를 포함한 복합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와 설계VE를 포함한 복합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 설계VE는 대안도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안설계자를 배제한 제3자가 실시토록 함. 따라서 설계와 VE는 별도 발주하여야 함
    -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자도 원안설계자에 포함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VE 수행자의 자격 중,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소지자와,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은?

# 주요 질의 회신

- 설계VE 수행자의 자격 중,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소지자와,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은?
  -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 : 국내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예, CVP, CVC-P, LCVS, CVS(美,日), CVA(英) 등)
  - VE전문교육과정 : SAVE International Module | 과 이에 준하는 교육 (예, 한국건설VE연,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기본,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 VE 실시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기본,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 VE 실시
- 기본설계시 공사비가 100억 미만으로,VE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중 100억 초과한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VE 실시여부?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기본,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 VE 실시
- 기본설계시 공사비가 100억 미만으로,VE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중 100억 초과한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VE 실시여부?
  - VE는 설계 진행 중에 설계내용에 대한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하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바, 기본설계에 대한 VE를 소급하여 실시할 실익이 없음.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기본,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 VE 실시
- 기본설계시 공사비가 100억 미만으로,VE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중 100억 초과한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VE 실시여부?
  - VE는 설계 진행 중에 설계내용에 대한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하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바, 기본설계에 대한 VE를 소급하여 실시할 실익이 없음.
-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된 설계에 대해 발주 전 VE시행 여부?

# 주요 질의 회신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경우의 VE시행 횟수는?
  - 기본,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 VE 실시
- 기본설계시 공사비가 100억 미만으로,VE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 중 100억 초과한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VE 실시여부?
  - VE는 설계 진행 중에 설계내용에 대한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하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바, 기본설계에 대한 VE를 소급하여 실시할 실익이 없음.
-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된 설계에 대해 발주 전 VE시행 여부?
  - VE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 실시 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시행한 경우에는 발주 전 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VE는?

-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VE는?**
  - 설계감리와 설계VE는 그 대상 및 업무범위가 상이하며,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에는 설계VE 포함
  - 당해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와 설계VE 대상으로 모두 실시해야함
  - 단, 설계감리용역 과업범위에 VE업무 포함, 설계VE 별도발주 불필요
  - 그러나, 설계VE만으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는 없음

# 주요 질의 회신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 설계자가 설계VE를 실시할 경우 대안도출에 한계가 있고 효과를 기대 하기도 곤란하여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실시함을 원칙
  - 턴키공사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동일인으로 원안설계자에 포함 됨

# 주요 질의 회신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 설계자가 설계VE를 실시할 경우 대안도출에 한계가 있고 효과를 기대 하기도 곤란하여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실시함을 원칙
  - 턴키공사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동일인으로 원안설계자에 포함 됨
- **원안설계 회사의 계열회사가 당해 설계VE에 참여가능 여부?**

# 주요 질의 회신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 설계자가 설계VE를 실시할 경우 대안도출에 한계가 있고 효과를 기대 하기도 곤란하여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실시함을 원칙
  - 턴키공사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동일인으로 원안설계자에 포함 됨
- **원안설계 회사의 계열회사가 당해 설계VE에 참여가능 여부?**
  - 원안설계자의 계열사까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설계VE는 객관적 기능분석을 통하여 가치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기법임을 감안 계열사 참여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 할 사항

# 건설CALS 포털시스템

※ 설계 VE마당 : [www.calspia.go.kr](http://www.calspia.go.kr)

건설CALS포털시스템 - Windows Internet Explorer

## 설계VE마당

설계VE 결과등록  
 \* 사업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설계VE 입력현황 모니터링

설계VE 실적관리  
 설계VE 통계  
 설계VE 개요  
 설계VE 절차  
 설계VE 양식 다운로드

설계VE 도구모음  
 매뉴얼 다운로드  
 설계VE 우수사례집

## 설계VE 결과등록

### 사업정보 입력

사업명	공사구분	전체	발주기관	전체
공사위치	시설물종류	전체	공사비	전체
검토조직유형	검토단계유형	전체	검색 [X] 액셀	

VE설시일자  월별  기간별  년도별  사용안함

▶ 사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다운로드](#)

No	사업명	발주기관	공사비 (백만원)	공사위치
69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배수펌프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66.6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
697	울산우정혁신도시 특수구조물(배수지)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696	경인 아라뱃길 부속사업(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호안 조성)	인천항만공사	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 경서동
695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694	인천 북항 투기장 부지조성공사	인천항만공사	32,04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북항
693	부산항 항로 중심(개발)준설공사, 감만부두 접안시설(안벽)보강	부산항만공사	94,613	경남 진해시 연도동 신항 수역
692	북항대교 건립에 따른 신선대부두 건물 재축공사	부산항만공사	14,700	부산 남구 용당동 123번지 일
691	부산항 신항 옹동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산항만공사	44,100	경남 진해시 제덕동 옹동 항만
690	러시아 나홋카항 Fishery Port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	부산항만공사	145,500	극동 러시아 나홋카시 나홋카항
689	동해항 북부두 Port Renewal 사업	동해지방해양항만청	48,000	강원 동해시 송정동 1~848 동
688	강릉시 남항진리 연안정비사업	동해지방해양항만청	26,794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리 해안일
687	경북김천혁신도시 Ab2BL 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418.29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북김천

- ### 주요기능 바로가기
- ▶ 건설공사 사후평가
  - ▶ **설계VE마당**
  - ▶ 공사성적서
  - ▶ 공사조사입력
  - ▶ 공사성적보고
  - ▶ 시설
  - ▶ 성과보고
  - ▶ 현장모니터링



건설CALS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www.calspia.go.kr/com/mainForm.do

건설CALS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국토해양부 **건설CALS포털시스템** 홍보마당

Construction CALS Portal System  
**건설CALS포털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CALS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계약사용) [바로가기 >](#)

건설인허가시스템 (민원인용) [바로가기 >](#)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항만청/지자체/계약사용) [바로가기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info 지반정보

## ■ 국토부 성과평가 처리지침 개정(안)

### ● 대상자(설계VE를 통한 사업비 절감 공무원 근평시 가점부여)

- 우리부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설계VE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직원 또는 전국 VE 경진대회 입상자

(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개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설계VE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함)

###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으로서 담당자와 팀원간 차등배점

# 참고자료

## ■ 국토부 성과평가 처리지침 개정(안)

### ● 가점평정 기준 및 배점(상한점 0.75점) 개정

- 발주이전 사업에 한함 ⇒ 설계·시공중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
- 설계VE 절감율당 차등배점

절감율	(현 재) 담당 / 팀원	(개정안) 담당 / 팀원
5%이상~	0.75 / 0.50	0.40 / 0.20
4%~5%미만	0.50 / 0.30	0.30 / 0.15
3%~4%미만	0.30 / 0.15	0.20 / 0.10
2%~3%미만	0.10 / 0.05	0.10 / 0.05

※ 설계VE 의무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자율적 VE시행으로 예산절감시 해당항목에 0.30점 추가 가산

\* 100억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 10%이상 사업비 증가사업

- 전국 VE경진대회 입상자 : 최우수상 0.5/0.3 우수상 0.3/0.15 장려상 0.1/0.05

## ■ 국토부 성과평가 처리지침 개정(안)

### ● 향후계획

- 개정(안) 확정 후 고시 및 **관계부처**(중앙, 지방, 공공기관 등) **활용 권고**
- **시공중 VE활성화 방안 마련**(VE시행지침 개정, 14상반기)
  - \*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적극 반영 등



감사합니다